

#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 외 22명

나. 의안번호 : 제2736호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
-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, 농업·임업피해,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(안 제9조의3 신설)
- 나.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4 신설)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    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,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동물원수족관법”)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원·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 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 행위를 금지하고,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지난 2022년 법 제8조의3 개정(신설)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 금지가 규정되었고, 위반 시 법 제69조(벌칙) 제1항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부칙을 통해 개정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하고,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는 4년 동안 전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<sup>1)</sup>를 둔 바 있음.

- 또한, 「동물원수족관법」 개정으로 기존 ‘등록제’에서 보유동물 서식환경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‘허가제’로 전환되었음.

---

1) 부칙 <법률 제19088호, 2022. 12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11조, 제13조제1항, 제21조제1항제2호다목·라목,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4조제1항제2호,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생 략)

제3조(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, 보유동물의 종,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안 제9조의3은 앞서 제시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야생동물 전시 행위 허가 및 금지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- 안 제9조의4는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야생동물 피해예방’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음.
- 안 제13조제3항제1호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<sup>2)</sup>하여 ‘유독물질’을 ‘인체급성유해성물질’, ‘인체만성유해성물질’, ‘생태유해성물질’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견 없음.

---

2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[시행 2024. 2. 6.] [법률 제20231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

1. (생 략)

2. “유독물질”이란 유해성(有害性)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3. ~ 13. (생 략)

※「화학물질관리법」 [시행 2025. 8. 7.] [법률 제20231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제2호

2. “인체급성유해성물질”이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.

2의2. “인체만성유해성물질”이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.

2의3. “생태유해성물질”이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.